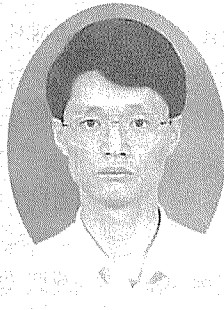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이철규

〈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팀 차장 〉

「석유 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지난 수십년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에너지절약」이다. 에너지절약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절약노력과 IMF사태가 상당한 에너지소비 감소를 가져왔으나 '98년도 한해동안 우리나라 석유소비량은 6억7천만 배럴로 세계 제6위의 소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원유수입량은 8억2천만 배럴로 세계 제4위의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더구나 에너지원중 석유의존도는 '97년 60.4%에서 '98년 54.6%로 감소하였으나 세계평균 석유의존도 38%에 비해 월등히 높고, GDP당 석유수입비중도 5.0%로 OECD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OECD국가들 중 에너지공급기반이 가장 취약하여 공급위기사 경제 전반 및 국가안보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금년초 10달러/배럴선 이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OPEC의 감산합의로 인하여 25달러/배럴로 급등하였으며, 작금

에는 20달러/배럴선을 유지하고 있다. OPEC의 감산 영향이 이리하고, 주요 산유국들이 아프리카, 남미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지역은 정치, 군사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절약」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에너지절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석유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 즉 “해외석유개발”뿐이다.

왜 석유개발사업을 해야하는가?

세계적인 석유전문 컨설팅회사인 Petroconsultants사에서 40여년간 근무해온 “Colin Campbell”은 그의 저서 「The Coming Oil Crisis」에서 석유자원의 유한성, 부존 지역의 편재성, 그리고 OPEC의 시장점유율 증대에 따른 정치적 힘의 논리 등을 근거로 석유생산의 정점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다다르게 되고 그 이후 점차 생산량 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세계 석유 시장에서는 생산량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보다 그 이전

에 석유타일러들에 의해 그 시점이 예측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가는 견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그의 예측이 다른 연구기관들의 견해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비관적일 수도 있으나 언젠가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므로 제 3차 석유위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석유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중에 하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석유개발정책이다. 14억의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급진적으로 산업화되고 있어 중국의 향후 석유수요는 예측불가이며,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력으로 1인당 석유소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일일 6,500만배럴의 석유가 필요하다. '97년도 세계석유생산량이 7,200만B/D 정도였으므로 그 파장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93년부터 석유순수입국으로 전략한 가운데 CNPC(중국석유가스총공사)가 무서운 힘으로 공격일변도의 해외광구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가한 바 있는 '97년 6월의 베네수엘라 한계유전 입찰에서 CNPC는 다른 경쟁사의 입찰금액의 2배 이상의 입찰가로 2개의 유전(인터캠포노르테 유전 : 1억8천만불, 카라콜레스 유전 : 2억 4천만불) 획득에 성공하여 유명 석유메이저들을 당황하게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주요 석유생산 회사인 아티유빈스스케프테사 주식 60%도 미국 및 러시아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무려 43억불에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8억6천만배럴의 원유매장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라크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현재 일 50만배럴 정도인 중국의 석유수입량이 2000년대 300만배럴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제성을 초월한 석유자원확보정책은 경제성장의 혈맥이 되고 있는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중국의 확고한 국가정책추진의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0만B/D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석유정책이 이렇게 저돌적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을 볼 때, 200만B/D가 넘는 석유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석유개발사업

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절대적으로 요망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 실태

1981년 인도네시아 서미두라광구 진출을 효시로 '99년 11월 현재까지 총 93개 사업에 진출하여 생산사업 16개, 개발사업 5개 및 탐사사업 35개 등 총 56개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37개 사업은 상업적 발전에 실패하여 철수하였다. 참여초기 경험부족과 탐사광구위주의 사업 참여로 많은 사업이 실패하여 '90년대 초 조정기를 맞이하였으나 '95년 이후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으로 개발·생산유전의 매입과 동시에 탐사사업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용자지원 등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신규사업참여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97년까지 3년동안 41개 신규사업에 참여하여(표1 참조)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제 2의 활황을 맞이하는 듯 하였다.

〈표1〉 해외석유개발사업 추진실적

		'93	'94	'95	'96	'97	'98	'99
신규사업 참여 (A)	생 산	-	-	-	2	8	-	-
	개 발	1	1	1	-	2	-	-
	탐 사	1	5	9	10	9	5	1
	소 계	2	6	10	12	19	5	1
사업종료(B)		3	6	3	5	-	3	3
증감(A-B)		△1	0	7	7	19	2	△2
신규사업참여사		3	10	7	7	8	3	1
진행사업		23	23	30	37	56	58	56

그러나 '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석유개발업계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반면 환율상승으로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배가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과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해외석

유개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기업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일부업계에서는 참여지분 매각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려 노력하였으나 그마저 여의치 못하여 '98년에는 5개 신규사업의 진출에 그쳤으며, '99년에는 석유공사가 진출한 남미 수리남 탐사광구 1건에 불과하고 민간기업은 단 1건의 신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석유개발사업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

'99년 6월말 현재 총 93개 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하여 민간사 2,047백만달러, 석유공사 656백만달러 등 총 2,704백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1,895백만달러를 회수하여 70.1%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9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98년도에 들어 47.7%, '99년 상반기에 36.3% 감소하여 IMF이전인 '97년의 1/3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투자재원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용자액이 566백만달러로 20.9%, 석유공사 자체자금이 458백만달러로 16.9%, 그리고 민간사 자체자금이 1,680백만달러로 전체투자액의 62.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비 회수 측면에서도 1,895백만달러중 민간부문의 회수액은 1,585백만달러로 83.5%를 차지하며 회수율도 77.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부의 2010년도 자주개발원유도입을 10% 목표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산업이 IMF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IMF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인데 반해 해외석유개발사업만은 아직까지도 길고 긴 터널의 한 중앙에 놓여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에 민간부문은 단 1건의 신규사업에도 진출하지 못하였고 기존사업 유지에 급급한 실정 이어서 민간부문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 20년 가까이 애써 일궈 온 민간부문의 석유개발사업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 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81-'95	'96	'97	'98	'99.6	계
민 간 사	에특용자	235,571	53,089	48,809	28,572	1,615	367,656
	자체조달	1,081,290	128,739	259,443	158,639	51,612	1,679,723
	계	1,316,861	181,828	308,252	187,211	53,227	2,047,379
석유공사	에특용자	110,202	38,211	14,201	33,509	2,257	198,380
	자체조달	49,423	22,671	260,235	84,138	41,570	458,037
	계	159,625	60,882	274,436	117,647	43,827	656,417
국내전체	에특용자	345,773	91,300	63,010	62,081	3,872	566,036
	자체조달	1,130,713	151,410	519,678	242,777	93,182	2,137,760
	계	1,476,486	242,710	582,688	304,858	97,054	2,703,796

향후 추진방향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은 다시 강조하지만 민간업계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민간업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없이는 석유개발사업의 진로는 불투명하다. 지금과 같이 자금부족으로 투자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을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석유개발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① 실용자비율 상향조정, ② 기업부채비율에서 에특용자금 제외, ③ 정유사의 석유개발사업 참여 유도, ④ 석유개발기금의 조성 등 보다 실리적이고 직접적인 투자유인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가. 실용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석유개발사업과 관련된 현행 용자지원 고시 및 규정에는 탐사사업의 경우 최고 소요자금의 80%까지, 개발 및 생산유전 참여사업의 경우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석유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97년도

평균 지원비율은 탐사사업 40%, 개발사업 30% 정도에 그쳤으며, 지난 '98년에는 사업의 축소와 신규사업진출 감소로 인하여 각 52.7%와 42.7%로 '97년보다 12.7% 증가되었고, 신규사업 참여가 거의 없는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진출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평균 지원비율 70~80%에 비해 20%이상 낮은 수준이다. 우리 민간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탐사사업에 대한 실질용자비율이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나. 기업부채비율에서 에특용자금을 제외시켜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기준조건으로서 기업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80%를 용자지원할 경우 부채비율이 400%가 되므로 기업전체의 부채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탐사사업에 지원되는 성공불용자의 경우 사업실패시에는 감면되고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채로 볼 수 없다.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특성상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을 전액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 경쟁력있는 메어저급 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정유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유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정유사들에게 일정 마진을 보장하여 왔으나 국내 석유시장의 개방과 국제화·세계화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완전 자유경쟁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유사들도 보다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97년도 우리나라 평균 원유도입단가가 19.28달러/배럴이었으나 최근 국제유가는 20달러/배럴이상으로 상승하여 정유사들은 생산원가 상승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으나, 97년도 자주개발원유 생산단가는 8.46달러/배럴이었으며 기술발전이 따라 생산단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정유

사들이 저가의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은 상호 Hedging 관계가 있어 21세기에는 상·하류부문을 모두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석유사만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석유소비절약, 유가폭등에 대한 완충기금 확보 및 대체에너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입석유류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자주개발원유의 도입은 단순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부과금을 단순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정유사들이 자주개발하여 도입하는 원유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유사는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 석유개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투자에 비유할 수 있다. 미리 공고된 분양계획에 따라 입찰을 준비하여 국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자원보유국 정부와의 친분에 의한 수익계약 방법, 광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참여제의를 받거나 정보지 등을 통해 알려진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 가하면 부동산처럼 좋은 광구가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예산과 같이 경직되어 있는 에특예산으로는 불가능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석유개발만을 위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사업의 특성상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머니가 있어야 한다.

개발기금은 첫째, 현 에특예산 중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에서 연 2,000억원 수준으로 증대하여 개발기금화 해야 한다. 둘째, 앞에서 제외한 자주개발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분 중 일부, 그리고 성공한 사업에 대해 징수하고 있는 특별부담금을 132원/kl인 일본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차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